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4~94
----------	---------

발의연월일	2014. 11. 20.
발 의 자	강철우·최광열·표주숙·권재경형남현· 김향란·박희순·변상원 의원(8인)

### 1. 제안이유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한다.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나. 예산 조치 : 2015년 예산 확보

다. 집행부의견조회 : 해당없음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11. 24 ~ 12. 01

(4) 비용추계서 : 붙임

##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설명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p>	<p><b>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b>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li> <li>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li> <li>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설명 및 홍보활동</li> <li>4.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li> </ol>
<p>〈신 설〉</p>	<p><b>제11조(위원회 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균형 있게 위촉한다. 다만,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li> <li>2. 군내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li> <li>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li> </ol>
<p>〈신 설〉</p>	<p><b>제12조(위원의 임기)</b>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설〉</p>	<p>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설〉</p>	<p>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신설〉</p>	<p>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담당주사가 된다.</p>
<p>〈신설〉</p>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시행규칙) ----- -----</p>

## 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